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지원〉

■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55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지원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6인
2. 제안일 : 2024. 6. 26.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지원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지원되는 진료
비용에 비급여 대상¹⁾ 비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u>약제비용</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u>약제비용</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요양급여·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²⁾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보훈병원 진료 시에는 비급여 대상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 진료 시에는 비급여 대상 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 등 총 6곳에만 설립·운영³⁾되고 있어 원거리 등으로 인해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 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⑤ ~ ⑦ (생략)

3) 중앙보훈병원(서울),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진료 비교 >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급여	감면지원(90%감면)	감면지원(90%감면)
	비급여	감면지원(90%감면)	미지원
약제비		감면지원 (90%감면)	감면지원 (90%감면) * 단, 1인당 연간한도액 252,000원

자료 :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 대상 비용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⁴⁾ 되므로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신체적 희생이 있는 상이유공자도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는 3종(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되고 있어,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위탁병원 비급여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 외에 상이유공자, 비상이유공자 등을 함께 포함하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다양한 의료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우선

4) 보훈병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할 경우 연 765억원 추가 재정 소요(국가보훈부 추산)

순위, 국가재정 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훈부는 현재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위탁병원 확충을 국정과제로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의료수가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수가관리와 과잉진료 방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위탁병원 확대에 더하여 위탁병원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초래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지원 내역

구분	국비진료	감면진료
보훈병원	▶ 대상자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지원범위 : 전액 국비 지원 ※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	▶ 대상자 : 비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 지원범위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30~90%)을 적용한 금액 지원 ※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 대상자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지원범위 : 전액 국비 지원 ※ 비급여는 MRI · 초음파 · 건위소화제만 지원, 원외 처방 약제비 지원	▶ 대상자 : 비상이유공자(참전·무공·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유족(유족은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일 경우) ▶ 지원범위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60~90%)을 적용한 금액 지원 ※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미지원 비상이유공자 약제비는 연간한도내(최대 252천원) 지원

자료 : 국가보훈부